

# 國立大學圖書館 改善方案

( 1982. 9. 29. 建議 )

## 머리말

從來의 大學教育方式은 講義를 통한 知識의 注入에 置重하는 傾向이 있었고 圖書館奉仕 또한 資料提供서비스가 그 大宗을 이루어 왔습니다. 科學技術의 急速한 發展과 國家經濟의 急成長으로 教育環境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圖書館奉仕 또한 보다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情報提供서비스로 그 奉仕內容 및 體制의 變換이 不可避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大學教育은 國家發展의 原動力이 될 수 있는 學問研究 및 技術開發의 震源이라고 할 수 있으며 大學圖書館은 大學教育의 基本的 支援施設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大學圖書館이 그 本來의 機能을 제대로 遂行하게 하려면 業務遂行에 關聯된 諸般 問題點들이 時急히 解決되어야 할것 입니다. 이러한 問題點은 内部的인 것보다는 圖書館 外的인 要因이 大部分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數十次 問題點解決과 改善方案等을 建議하여 多少는 改善되어 간다고는 하겠으나 너무나 未洽한 點이 많은 것들이 오늘의 現實이라 하겠습니다.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組織을 合理化하고 各種基準을 現實化 함으로써 奉職者로 하여금 使命感을 가지고 業務에 專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고 生覺합니다. 本 建議書는 大學圖書館에 關聯된 몇가지 問題點을 拔萃하여 그 改善方案을 提示하는 것이니 善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各種基準의 合理化

### 1) 閱覽席

#### 가. 現 況

學生定員의 15% 以上

#### 나. 問題點

- ① 圖書館 利用 性向의 顯著한 增大로 基準을 超過確保한 圖書館의 境遇에도 閱覽席의 심한 不足現狀은 如前
- ② 讀書室 役割까지 代行하던 講義室이 全日制 授業實施에 따라 本

來의 用途로 專用하게 되어 閱覽席의 不足現狀은 더욱 加重

- ③ 卒業定員制 實施에 따라 在學生數의 激增으로 閱覽席의 不足現狀은 더욱 深化
- ④ 閱覽座席을 차지하기 위하여 開館時間 훨씬 전부터 長蛇陣
- ⑤ 時間表上에 空白이 있는 學生들을 圖書館에로의 誘致가 困難하여 勉學 學界圈氣造成的 問題點으로 抬頭

다. 改善案

閱覽座席數를 在學生 定員의 25% 以上으로 上向調整

라. 行政措置

大學設置基準令改正

2) 藏 書

가. 現 況

- ① 圖書：學生 1人當 30冊 以上으로 하되 學科當 5,000冊 以上
- ② 學術雜誌：學科當 5種以上

나. 問題點

- ① 藏書確保基準만 策定되어 있고 年間增加冊數에 대한 基準은 漏落
- ② 學術雜誌種數의 基準이 非現實的으로 過少策定

다. 改善案

- ① 年間增加冊數를 學生 1人當 3冊으로 함
- ② 學術雜誌數는 學科當 學問系列別로 다음과 같이 함.

系	列	別	種	數
人		文	30 種	以 上
社		會	50 種	"
自		然	50 種	"
家 庭	및	藝 體 能	20 種	"
醫		齒	200 種	"

라. 行政措置

大學設置基準令 改正

### 3) 司書職定員

#### 가. 現 況

學生數 500 名以下인 境遇 司書職 2 名, 그리고 500 名을 超過하는 800 名마다 1 名의 司書職을 增員함.

#### 나. 問題點

現行基準은 施設의 規模, 藏書數, 閱覽席數 및 年間 增加冊數等을 考慮치 않고 오직 學生數 한가지만에 依하여 策定되어 있어서 不合理하고 非現實의이며 또한 過多한 臨時職員의 雇傭으로 因하여 業務能率이 低調하고 奉仕內容이 不實하게 됨.

#### 다. 改善案

學生數 1,000 名, 藏書數 50,000 冊을 基準으로 最低 10 名의 司書職員을 두되 學生 1,000 名마다 司書職員 1 名, 藏書 20,000 冊마다 司書職員 1 名, 그리고 年間增加 5,000 冊마다 司書職員 1 名씩 各 增員토록 하고 司書職 對 非司書職의 比率을 1 : 1로 함.

#### 라. 行政措置

圖書館法 施行令 改正

#### ※ 司書職 所要人員의 바람직한 算出公式

所要人員 = 基本所要人員 + 增員人員

基本所要人員 = 最低基準人員 + 超過所要人員 (一定時點基準)

超過所要人員 = 學生數 超過에 따른 超過所要人員 + 藏書數超過에 따른 超過所要人員.

增員人員 = 年間藏書數 增加에 따른 所要人員 + 其他要因으로 因한 所要人員.

## 2. 組織의 合理化

### 1) 職列 및 職級調整

#### 가. 現 況

司書職列은 行政職群에 속해 있으며 그 最上 職級이 4 級으로 되어 있음.

※ 公務員任用令이 大統領令 第 10345 號 ( 81.6.10 ) 로 改正됨에 따라 最上職級이 4 級으로 되었으나 이는 1949 ~ 1970 年 당시의 職級 ( 現行 4 級 ) 으로 還元된 것에 不過함.

나. 問題點

- ① 司書職業業務는 그 業務의 內容이나 性格上 多분히 教育 및 研究的 機能을 가지고 있으며 資格證을 必要로 하는 專門職인 職種인 데도 非研究職列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② 司書職의 最上職級 조차 4 級으로 낮게 規定되어 있어 有能한 司書職의 確保가 困難하여 業務의 內容이 質的으로 低下

다. 改善案

司書職列을 行政職群으로 부터 學藝職群의 研究職列로 轉屬케 함과 同時에 最上職級을 最少한 3 級까지 上向調整

라. 行政措置

公務員 任用令 改正

2) 職制改編

가. 서울大學校

① 現行職制

收書課, 整理課, 閱覽課, 參考書誌課 및 奎章閣 圖書管理室의 4 課 1 室을 두고 있으며 各課長은 書記官으로 奎章閣圖書管理室長은 教授 또는 副教授로 兼補

② 問題點

各課長은 非專門職인 書記官이 占職하도록 되어 있어 專門的인 司書業務의 特殊性이 缺如되고 業務의 能率이 不振함

③ 改善案

各課長을 專門職인 司書官(4 級)으로 補함.

④ 行政措置

서울大學校 設置令 改正

나. 綜合大學校(서울大學校 除外)

① 現行職制

㉞ 收書課 및 閱覽課의 2 課編制

㉟ 收書課長은 行政事務官, 閱覽課長은 司書官(5 級)으로 補하게 되어 있음.

② 問題點

㉞ 圖書의 分類, 目錄專擔部署가 없음.

㉟ 5 級 司書官이 策定되어 있는 大學은 國立 綜合大學校中 3 個校部(慶北大, 釜山大, 全南大) 뿐임.

㉔ 行政事務官이 司書專門職業務까지 分掌함으로 因한 業務內容의 不實.

③ 改善案

㉕ 庶務課, 司書課 및 閱覽課의 3課職制로 改編.

㉖ 庶務課長은 行政事務官, 司書課長 및 閱覽課長은 司書官(4級)으로 補하도록 함.

④ 行政措置

國立學校設置令改正

다. 單科大學

① 問題點

附屬施設로서의 圖書館은 두고 있으나 職制는 없음.

② 改善案

圖書館長 補佐役으로 司書官 1名配置

3. 司書職 手當의 支給

1) 現 況

公務員手當規程中 改正令(82.2.2. 大統領令 10711號) 및 地方公務員手當 規程中 改正令(82.2.9. 大統領令 10723號)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을 위시한 모든 公共圖書館 및 市立大學圖書館에 勤務하는 司書職等 司書職의 大部分에게 司書職 手當이 支給되고 있으나 國立學校에 勤務하는 司書職은 手當을 받지 못하고 있음.

2) 問題點

같은 司書職이면서도 또 같은 大學圖書館에 勤務하면서도 國立大學에 勤務하는 司書職에게는 手當을 支給하고 있지 않아 사기가 크게 저하 되어 있고 公平하지 못함.

3) 改善方案

手當을 받지 못하고 있는 一部 司書職에게도 公平하게 手當을 支給함.

4) 行政措置

公務員手當規程 改正

4. 圖書購入費의 增額

1) 現 況

가. 圖書購入費는 各大學의 一般 需用費나 一般資產取得費中에 屬여서 策定

나. 國庫豫算不足을 補充하기 위하여 期成會豫算中에 圖書館經費를 策定

다. 大學經常費(施設費, 病院經費除外)에 대한 圖書購入費 比率이 平均 1.2%이고 藏書確保率이 36% (1981.3.31 현재)

## 2) 問題點

가. 圖書購入費의 他費用으로의 支出事例 許多

나. 卒業定員制로 因한 在籍生의 急增으로 藏書數의 絶對不足 深化

다. 藏書確保率의 低調로 效果的인 圖書館奉仕가 困難

## 3) 改善案

가. 圖書購入費項目을 獨立 新設

나. 大學經常費(施設費, 病院經費除外)의 5%以上으로 策定.

## 4) 行政措置

國庫 및 期成會豫算編成指針 示達

## 5. 圖書館業務專擔部署의 新設

### 1) 現況

가. 圖書館은 그 種類에 따라 大學圖書館은 大學學務課, 公共圖書館은 社會教育課, 學校圖書館은 市道教育委員會, 그리고 特殊圖書館은 各各 所管副處의 部署에서 管掌하고 있음.

나. 圖書館業務를 指導監督하는 部署에 司書專門職이 1名도 없음

### 2) 問題點

가. 各種 圖書館의 共通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各部署間에 意見調整이 困難하여 圖書館 發展政策의 樹立과 그 推進이 困難

나. 圖書館에 관한 各種調查 및 指示等에서 用語의 使用이나 各種基準의 設定 또는 書式上에 問題가 있다면 그 調查 및 報告資料의 效用性에도 問題가 있을 것으로 豫想됨

### 3) 改善案

文敎部內에 圖書館業務專擔部署로서 局 또는 課를 設置하여 專門職으로 하여금 圖書館發展長短期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強力히 推進케 하여 各級圖書館을 指導監督토록 함 (1979.4.26 國務總理指示參照)

### 4) 行政措置

文敎部 職制改正

## 6. 圖書館 關係 法規의 整備

### 1) 圖書館法의 改正

#### 가. 問題點

圖書館法에서는 大學圖書館을 學校圖書館 範疇에 包含시키고 있어 그 特殊性이 度外視되고 있으며 現行法規는 1963年에 制定된 後 약 20年 동안 한번도 改正된 바 없어 現實性이 缺如

#### 나. 改善案

圖書館法上 大學圖書館에 관하여 1個章을 設置하고 大學圖書館의 設置, 施設, 藏書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을 따로 規定함으로써 그 重要性에 對한 認識을 強調함

#### 다. 行政措置

圖書館法 ( 1963.10.28. 法律 第 1424 號 ) 의 改正

### 2) 圖書館資料管理에 關한 規定制定

#### 가. 問題點

圖書館資料의 取得, 使用 및 保管 그리고 處分에 關하여는 物品管理法上의 包括的 規定에 依하여 一般物品과 같이 物品管理法의 適用을 받는바 利用을 主目的으로 하여야할 圖書館資料에 對하여 保管에만 置重하게 되어 利用의 提供을 忌避하는 現象이 나타나고 圖書館資料利用에 크나큰 障礙가 되어 圖書館機能發揮가 沮止되고 있음.

#### 나. 改善案

圖書館資料는 知識의 傳達媒體로서 그 利用이 目的이므로 本來의 目的대로 使用에 便利하고 保管責任上의 免責範圍를 法規化하도록 함.

#### 다. 行政措置

物品을 備品과 消耗品으로 區分하여 管理하듯이 圖書館資料도 그 取扱區分에 따라 永久保存價値가 있는 것은 甲種登錄資料로 하여 備品取扱토록 하며 永久保存價値가 없거나 消耗되기 쉬운 資料는 乙種登錄資料라 하여 消耗品으로 取扱할 수 있도록 圖書館資料에 關한 物品管理法의 特例規定을 設定함.

### 3) 國立學校設置令의 改正

#### 가. 現況

國立學校設置令 第 9 條 2 項의 教務課事務分掌事項中에 圖書館의 管理에 關한 事項이 規定되어 있음.

나. 問題點

- ① 文獻情報의 蒐集 및 提供에 自律性이 없고 不必要한 節次를 거치게 되어 있어 情報提供에 非能率的이고 圖書館 管理에 隘路가 적지 아니함.
- ② 서울大學校圖書館의 境遇는 이미 1980.6.20. 에 大統領令 第 9921 號로 서울大學校設置令 第 13 條 ②項을 改正하여 教務課事務分掌事項에서 「圖書館」을 削除하였으나 國立學校設置令은 아직 改正되지 않고 있음.

다. 改善案

教務課事務分掌事項에서 圖書館管理에 관한 事項削除

라. 行政培置

國立學校設置令改正